

제 22 장 예외

제 22.1 조 일반적 예외

1. 제2장(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), 제3장(원산지 규정), 제4장(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), 제5장(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), 제6장(표준 관련 조치), 제7장(무역구제) 및 제13장(전자상거래)의 목적상, 1994년도 GATT 제20조 및,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.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0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,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.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1994년도 GATT 제20조사호가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및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전에 관한 조치에 적용된다는 것을 양해한다.

2. 제9장(국경 간 서비스무역), 제11장(통신), 제12장(기업인의 일시 입국) 및 제13장(전자상거래)의 목적상, GATS 제14조의 가호, 나호 및 다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. 양 당사국은 GATS 제14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,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.

3. 제8장(투자)의 목적상, 그러한 조치가 투자 간 또는 투자자 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을 구성하거나 국제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, 이 협정은 당사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
- 가. 인간,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
- 나.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, 또는
- 다.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

제 22.2 조 국가 안보

이 협정은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
- 가. 어느 한쪽 당사국에게 정보의 공개가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그 당사국이 결정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

- 나. 어느 한쪽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
- 1) 무기·총포탄 및 전쟁 도구들의 밀거래와 관련되고 군사 또는 그 밖의 안보 시설에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해지는 그 밖의 제품·재료·서비스 및 기술의 밀거래 및 거래와 관련되는 조치
 - 2) 전시에 또는 국제 관계에서의 그 밖의 비상시에 취해지는 조치, 또는
 - 3) 핵무기 또는 그 밖의 핵 폭발장치의 비확산과 관련된 국가 정책 또는 국제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조치, 또는
- 다. 어느 한쪽 당사국이 국제 평화 및 안보 유지를 위한 국제 협정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

제 22.3 조 과세

1.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, 이 협정은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.
2. 가. 이 협정은 조세협약상의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 이 협정과 조세협약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,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그 조세협약이 우선한다.
나. 양 당사국간 조세협약의 경우, 그 협약상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에 불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을 진다.
3. 제2항에도 불구하고
가. 제2.2조(내국민 대우) 및 그 조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협정의 규정은 1994년도 GATT 제3조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한도에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. 그리고
나. 제2.8조(수출 관세,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) 및 제2.9조(내국세 및 배출 규정에 대한 최혜국 대우)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.
4. 제2항 및 제5항을 조건으로
가. 제9.2조(내국민 대우), 제10.2조(내국민 대우) 및 제10.5조(국경 간 무역)는 특정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에 관련된 소득, 자본이득 또는 기업

의 과세 가능한 자본에 대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. 다만, 이 호는 당사국이 특정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에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. 그리고

- 나. 제8.3조(내국민 대우) 및 제8.4조(최혜국 대우), 제9.2조(내국민 대우) 및 제9.3조(최혜국 대우) 및 제10.2(내국민 대우) 및 제10.3조(최혜국 대우)는 소득, 자본이득 또는 기업의 과세가능한 자본에 대한 과세조치 또는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금 이외의 모든 과세조치에 적용된다.

5. 제 4 항은

- 가. 조세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이익에 대한 최혜국 대우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- 나. 연금신탁 또는 연금계획에 대한 납입이나 그 소득과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당사국이 그 연금신탁 또는 연금계획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할권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것과 관련하여 내국민 대우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- 다.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.
- 라.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에 적용되지 아니한다.
- 마.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개정이 그 개정 시점에 제4항에 언급된 조들과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. 또는
- 바. 공평하고 효과적인 세금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(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당사국의 과세 체계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거나 과세의 기피 또는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이 취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) 양 당사국의 인, 물품 또는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.

6. 제2항을 조건으로, 그리고 제3항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, 제8.8조(이행요건)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.

7. 제8.11조(수용 및 보상)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. 그러나,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이 항에 따라 결정된 경우, 투자자는 제8.11조(수용 및 보상)를 제8.18조(당사국 투자자의 자기 자신을 위한 청구) 또는 제8.19조(당사국 투자자의 기업을 대신한 청구)에 따른 청구의 근거로 원용하지 아니한다. 투자자는 제8.20조(중재 청구 제기를 위한

의사 통보)에 따라 의사 통보를 할 때에 그 과세조치가 수용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지정 당국에 회부한다. 지정 당국이 그 문제를 검토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, 검토에 동의하였으나 그러한 회부시부터 180일의 기간 이내에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 동의하지 못한 경우, 투자자는 제8.23조(중재 청구 제기)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.

8. 이 협정은 공개될 경우 납세자의 세무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는 당사국 법에 반하게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
제 22.4 조 송금

1. 제8장(투자), 제9장(국경 간 서비스 무역), 및 제10장(금융서비스)은 한국이 「외국환거래법」 제6조에 따라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 다만 그러한 조치¹는 다음을 요건으로 한다.

- 가.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효할 것. 다만,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한국이 그러한 조치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, 한국은 연장안의 이행에 관하여 캐나다와 사전에 조율할 것이다.
- 나. 몰수적이지 아닐 것
- 다.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아닐 것
- 라. 규제 자산²에 관하여 한국 영역에서 시장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달리 방해하지 아닐 것
- 마. 캐나다의 상업적,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
- 바. 일시적이며, 그러한 조치 부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될 것
- 사. 부속서 I·부속서 II 및 부속서 III의 한국 유보목록을 조건으로, 제 8.3조, 제9.2조, 제10.2조(내국민 대우) 및 제8.4조, 제9.3조, 제 10.3조(최혜국 대우)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것, 그리고

¹ 한국은 그러한 조치가 가격에 기초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한다.

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이 호의 “규제 자산”이라는 용어는 한국의 영역 밖으로 송금되는 것이 제한된 캐나다 투자자에 의하여 한국의 영역에 투자된 자산만을 지칭한다.

- 아. 기획재정부 또는 한국은행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에 의하여 신속하게 공표될 것
2. 제1항은 다음을 제한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- 가.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송금. 다만,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.
 - 1) 그러한 조치 부과가 「국제통화기금협정」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하고³, 그리고
 - 2) 한국이 그러한 조치를 캐나다와 사전 조율하는 경우, 또는
 - 나.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

제 22.5 조 정보 공개

1. 이 협정은 공개되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, 각료급 정부 행정기관의 심의 및 정책 결정 과정, 개인 사생활 또는 금융기관의 개인 고객에 대한 금융 사무 및 계좌를 보호하는 당사국의 법에 반할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2. 이 협정은 이 협정상 분쟁해결절차 과정 중에 자국 경쟁법에 따라 보호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당사국에게 요구하거나, 특별 취급을 받거나 공개로부터 달리 보호되는 그 밖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당사국의 경쟁 당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
제 22.6 조 문화 산업

이 협정은 제1.6조(문화 협력) 및 제2.3조(관세철폐)상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, 문화 산업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
제 22.7 조 세계무역기구 의무면제

³ “경상거래”는 「국제통화기금협정」 제30(d)조에 규정된 의미를 가지며,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자본거래에 대한 통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지급만기가 도래하며, 지급이 제한되는 분할채무상환에 대한, 대부 또는 채권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다.

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중복되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한도에서, 세계무역기구협정 제9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가 채택한 의무면제 결정에 합치되게 당사국이 채택한 조치는 이 협정에 또한 합치되는 것으로 간주된다. 어느 한쪽 당사국의 합치 조치를 이유로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제8장(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)제2절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.

제 22.8 조 정의

이 장의 목적상,

경쟁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.

- 가. 한국의 경우, 공정거래위원회, 그리고
- 나. 캐나다의 경우, 경쟁위원회,
-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

문화 산업이란 다음의 활동에 종사하는 인을 말한다.

- 가. 서적, 잡지, 정기간행물 또는 신문을 인쇄 또는 기계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출판, 배포 또는 판매. 다만, 전술된 것들의 단순한 인쇄 또는 조판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함
- 나. 영화 또는 비디오 녹화물의 제작, 배포, 판매 또는 상영
- 다. 오디오 또는 비디오 음악 녹음물의 제작, 배포, 판매 또는 전시
- 라. 음악을 인쇄 또는 기계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발행, 배포 또는 판매
- 마. 일반 대중의 직접 수신을 의도하여 전송되는 무선 통신
- 바. 라디오·텔레비전 및 케이블 방송사업, 또는
- 사. 위성 프로그램 및 방송 네트워크 서비스

지정 당국이란

- 가. 한국의 경우,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말한다. 그리고

나. 캐나다의 경우, 재정부 조세정책 담당 차관보를 말한다.

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

경쟁법에 따라 보호되는 정보란

가. 한국의 경우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 2, 제50조 및 제62조의 범위내의 정보를 말한다. 그리고

나. 캐나다의 경우, 「경쟁법」 제29절의 범위내의, 또는 모든 승계 규정상의, 정보를 말한다.

조세협약이란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약이나 그 밖의 국제 조세협정 또는 약정을 말한다. 그리고

조세 및 조세조치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

가. 제1.8조(일반적 적용의 정의)에서 정의된 “관세”, 또는

나. 그 정의에 대한 예외 나호 및 다호에 기재된 조치

부속서 22-가 과세 및 수용

과세조치가 특정한 사실 상황에서 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사안별,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하며, 그러한 조사는 부속서 8-나(수용)에 열거된 요소들과 다음의 고려사항들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련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.

- 가. 세금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. 새로운 과세조치의 단순한 도입이나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관할권에서의 과세조치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.
- 나.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, 원칙 및 관행에 합치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. 특히, 과세조치의 기피 또는 회피를 막기 위한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.
- 다. 특정 국적의 투자자 또는 특정 납세자를 겨냥한 과세조치와는 반대로,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할 가능성이 적다. 그리고
- 라. 그 투자가 이루어진 때에 과세조치가 이미 시행 중이었고 그 조치에 대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 하였다면, 그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.